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80회 제1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1. 6.

복지문화 위원회
전문 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1. 6.

복지문화위원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여성가족과장)
- 제출일자: 2021. 5. 28.
- 회부일자: 2021. 5. 28.
- 검토기간: 2021. 5. 29. ~ 2021. 6. 4

2. 제안이유

-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어린이집 2개소, 공동주택 관리동 민간어린이집 3개소가 국공립전환을 신청하였으며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며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 제4조의3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상시설

어린이집명	소재지	규모 (면적,m ²)	정원 (현원)	운영자 (원장)	비고
월성무지개	학산로7길 39 (월성동, 월성주공3단지)	194.04	52 (34)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김미경)	법인단체 어린이집
성서전석	신당로56 (신당동, 성서주공1단지)	241.5	52 (43)	전석복지재단 (배진나)	
월성이편한	조암남로 10 (월성동, 월성이편한세상)	209.8	48 (48)	김순덕	민간 관리동 어린이집
으뜸	선원로 122 (이곡동, 성서2차서한타운)	144	30 (27)	진점숙	
태양빛	월서로3길 15 (상인동, 상인역이편한세상)	129	30 (14)	김승주	

나. 위탁개요

- 위탁내용
 - 어린이집 운영(아동 입소·상담 등 보육, 인사·회계 등)
 - 어린이집 시설 및 물품 등 재산관리
- 위탁기간: 5년
- 위탁체 선정 방법: 향후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한 선정
- 위탁체(수탁자): 평균점수 70점 이상의 기존 운영자에게 위탁

4.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5조(위탁운영)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의회동의 및 보고)

5. 검토의견

- 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현 상황에서 구는 현재 민간 어린이집을 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일련의 정책을 추진 중임.
- 금번 동의안에 반영된 공립 전환 대상 시설은 앞 (2쪽의) 표와 같이 ‘월성무지개어린이집’ 등 총 5곳으로서 집행부는 동 전환 대상 시설의 수탁 운영업체 선정을 위해 2021년 7월, <달서구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 동 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의 지침 준수 등 보다 객관적 절차에 따라 위탁(신청)업체의 전문성 및 시설운영 능력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며, 그 심사 결과 최고 점수를 얻은 자를 각 해당 어린이집의 수탁 운영자로 선정함.
- 집행부는 상기의 절차를 거쳐 총 5곳의 어린이집 민간 위탁 여부 및 그 수탁자 선정 과정에 대해 현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사전 의회 동의를 얻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함.
- 상위 법령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공립 어린이집을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보육관련 사업의 운영 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 능력,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 수탁업체를 선정토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위원회에서의 수탁자 선정 과정의 적합성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차원에서 추가 논의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사료됨.

【관련 법규】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5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공립어린이집을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은 영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2조(정의)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9. 5. 21.]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9. 5. 21.]

제4조의 2(의회동의 및 보고) ② 구청장이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때에는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 여부를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신설 2019. 5. 21.]